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주요점검 사항

2011. 9.

한국인터넷진흥원 차윤호 책임연구원



행정안전부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목 차

- 1** 개인정보란
- 2** 개인정보 침해사례
- 3**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개요
- 4**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현재와 달라지는 점
- 5** 법 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주요점검 사항

1 개인정보란?



1.1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 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음
- 사망하였거나 실종신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개인에 대한 사실·판단·평가 등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
-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 가능하게 하는 정보
-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ex) 주소+성명 / 성명+이메일주소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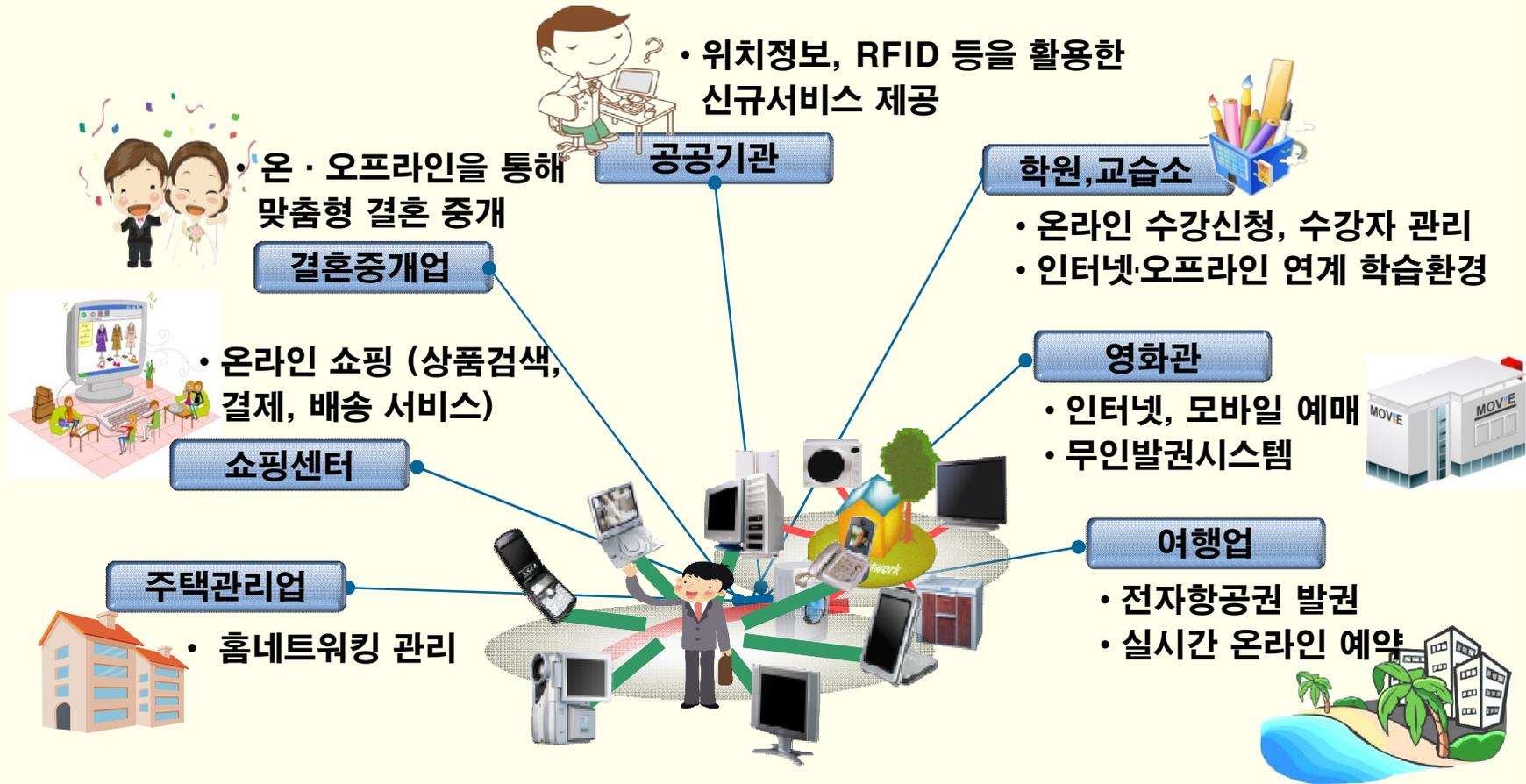
<참고: 개인정보의 종류>

“개인의 사적 영역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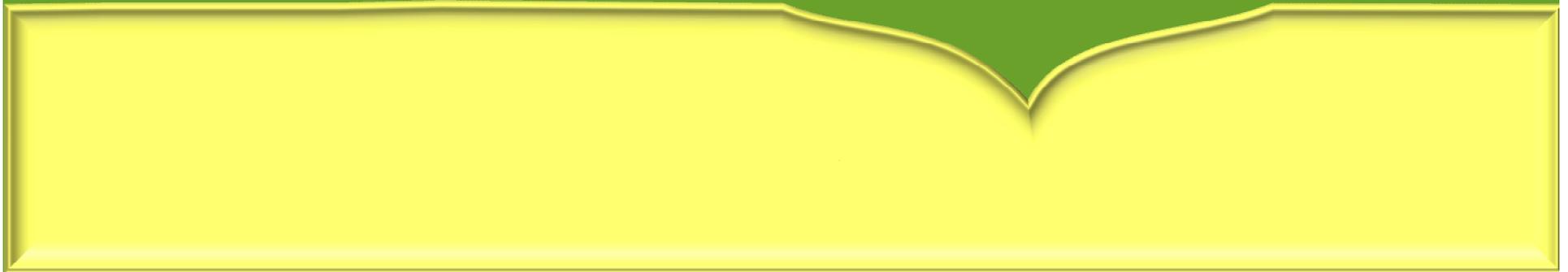


1.2 개인정보의 활용범위 확대

“정보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민간, 공공 서비스 형태 출현”



2 개인정보 침해사례



개인정보 2천만건
중국 해커에
구입 되팔아

선거인명색인부
나돌아

지자체-병원 홈페이지
정보유출 불감

1만 직원들,
개인정보 무단열람

행정문서 관리 허점...
OO 홈페이지,
4만명 정보 유출

현대캐피탈 해킹
42만명 정보 유출

돈받고 개인정보
유출

지자체 홈페이지도
개인정보 '줄줄' 샌다.

19시간 금융마비
금융망 뚫린 건 이례적... 범인 "돈 달라" 협박

스마트폰 개인정보 '술술'

10일 수요일 A14면 사회

東亞日報

2010년

개인정보 2000만건
중국 해커에 구입

유가환급금 신청때
개인정보 샀다.

19시간 금융마비
금융망 뚫린 건 이례적... 범인 "돈 달라" 협박



현대캐피탈 전산시스템이 해킹당해
42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현대캐피탈은 8일 오후 6시30분 보도자료를 내고 "신원 대상의 해커에게 일 부 고객 정보가 해킹당한 것으로 조 금 밝혔다. (관계자5명)은 해킹당한 고객 42만 명의 이 름과 주민번호" 등이 포함 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정했다.

해커가 "이유를 설명하고 고객 정보 가 유출된 사실을 알 수 없 는 일"이라며 "현대캐피탈 측은 "현 재로선 금융사고 조사에 집중하 는 작지만 고객 피해를 최소화 하 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사 측 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의 수를 대 비해 비밀번호 등을 바꿔 달라 는 당부했다.

1만여명 성적, 개인정보 유출
법학전문시험 응시자
개인정보 유출

일당

미של대회 접수자
개인정보 대거 유출

유가환급금 신청때
개인정보 샀다.

현대캐피탈 고객은 180여 만 명으로, 고객 네 명 중 한 명꼴 로 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금융사 에서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대거 금전을 요구했다. 현대캐피탈은 8 일 시범 해커가 "고객 정보를 인 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뒤 고객과 언론에 해킹 사실을 알렸다.

한 이종 삼중의 보안시스템을 갖 고 다양한 해킹 위협에 대비하고 있 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점유율 50% 를 넘는 업계 1위 업체가 해킹당했 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금융권 관 련 인터넷 회원 가운데 해킹 당한 고객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무려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해커가 직원 네 명이 해킹 사실을 숨겨야 해킹 사실을 e-메일 메일을 유출하지 않는 대거 금전을 요구했다. 현대캐피탈은 8 일 시범 해커가 "고객 정보를 인 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뒤 고객과 언론에 해킹 사실을 알렸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최 씨

안천=황금현 기자 kchwang@donga.com

의 ID와

다. 또 다음 달

스팀 판매업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이동양 기자 argus@donga.com

개인정보 유출 언론보도

해킹을 통한 금융정보 유출, SNS를 통한 빠른 시간 안에 개인 신상털기



- 해킹을 통한 금융정보 유출
- SNS 등을 통해 10분만에 신상 파악 가능
- 소셜네트워크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 커져

<2010. 11. 6 SBS 뉴스>

2.1 개인정보 유출경로 및 피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공공기관



준용 사업자



통신사업자



인터넷 사업자



비영리, 동호회



개인정보 유출 경로

내부자 고의



위탁 대리점



외부공격 (해커)



내부자 관리부주의



개인정보 축적·거래

온라인

음성시장을 통한 개인정보 거래



오프라인

CD 등 저장매체를 통한 직접 판매



2차 피해 발생

명의로용

- 대포폰 개설
- 신용카드 발급
- 회원가입

스팸발송, 명예훼손, 해킹 등 악성행위에 이용

대량 스팸, SMS 등에 악용 (Target Marketing)

금전적 피해 유발



2.2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2.3 개인정보 유출 사례

주민번호 도용

**ID 및 비밀번호 도용으로 게임
아이템 도난**

사고 사례

만여명의 개인정보 무단 도용 일당 구속

-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게임사이트에 가입한 뒤, 수백만원의 게임머니를 현금화함('10.2월)



웹사이트에 주민번호 노출

**중소규모 인터넷 사업자, 신규사업자,
공공기관, 동호회 등에서 관리
소홀**

사고 사례

유명 호텔 투숙객 개인정보 무방비 노출

- 허술한 보안관리와 구글 로봇 프로그램을 통해 호텔 투숙객 개인정보 노출('11.3월)

Google

검색결과 약 147,000개 (0.12초)

번호	성명	회원여부	연락처
14	박	la	063-
13	김	비회원	070-
12	김	비회원	02-
11	김	비회원	052-
10	김	비회원	02-
9	김	비회원	02-
8	박	비회원	02-
7	김	sa	02-
6	박	ch	02-
5	김	비회원	031-
4	김	비회원	02-
3	Kim	비회원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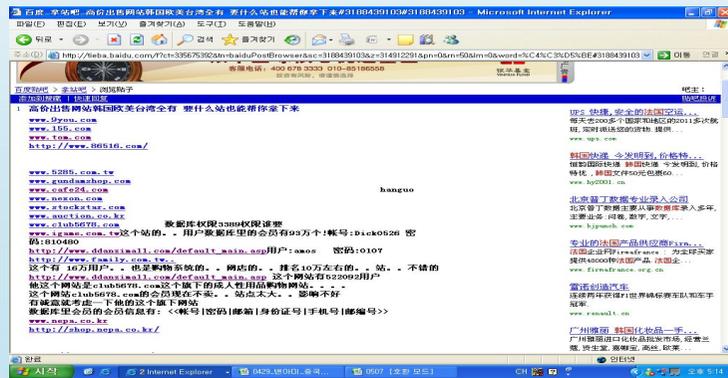
2.3 개인정보 유출 사례

해외사이트 주민번호 노출

중국, 대만 등 웹사이트에서 유포 및 거래 증가

사고 사례

해외사이트 주민번호 노출 심각, 중국 1위
 - 중국은 126건으로 전체의 48.6%이며, 대만 41건, 영어 36건으로 조사됨('10.10월)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탈취

중소규모 인터넷 사업자, 신규사업자, 공공기관, 동호회 등에서 관리 소홀

사고 사례

교과부 서버 해킹, 600만 학생정보 유출
 - 허술한 보안관리로 인해 교과부 서버 해킹으로 636만명의 개인정보 유출('10.9월)



2.4 개인정보 침해 원인



3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개요

3.1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배경

1.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 빈발로 국민 불안감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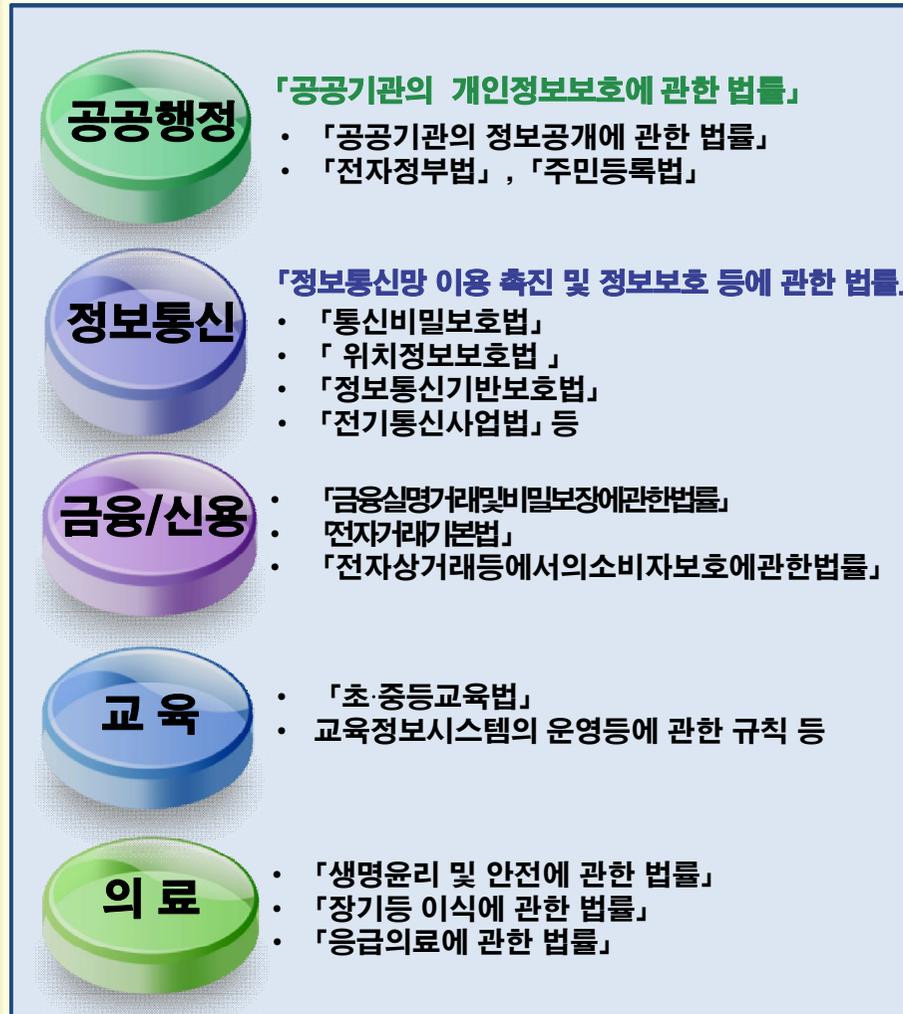
- 최근의 개인정보 침해는 **대형화 · 지능화 · 다양화** 추세
 - '10년 1억 건 이상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 해킹, 내부직원 유출, 담당자 부주의 등이 주요 원인

2.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미비로 법 적용 사각지대 발생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등 개별법 체계로 **헌법기관, 오프라인 사업자, 비영리기관** 등 관련법 부재
 - 현행 개별법 체계에서는 **법 적용 사각지대 발생**
 - **개별법 간 보호원칙, 처리기준 및 추진체계가 상이하**여 국민혼란, 일관된 정책추진에 한계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도

제정 전



공공부문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민간부문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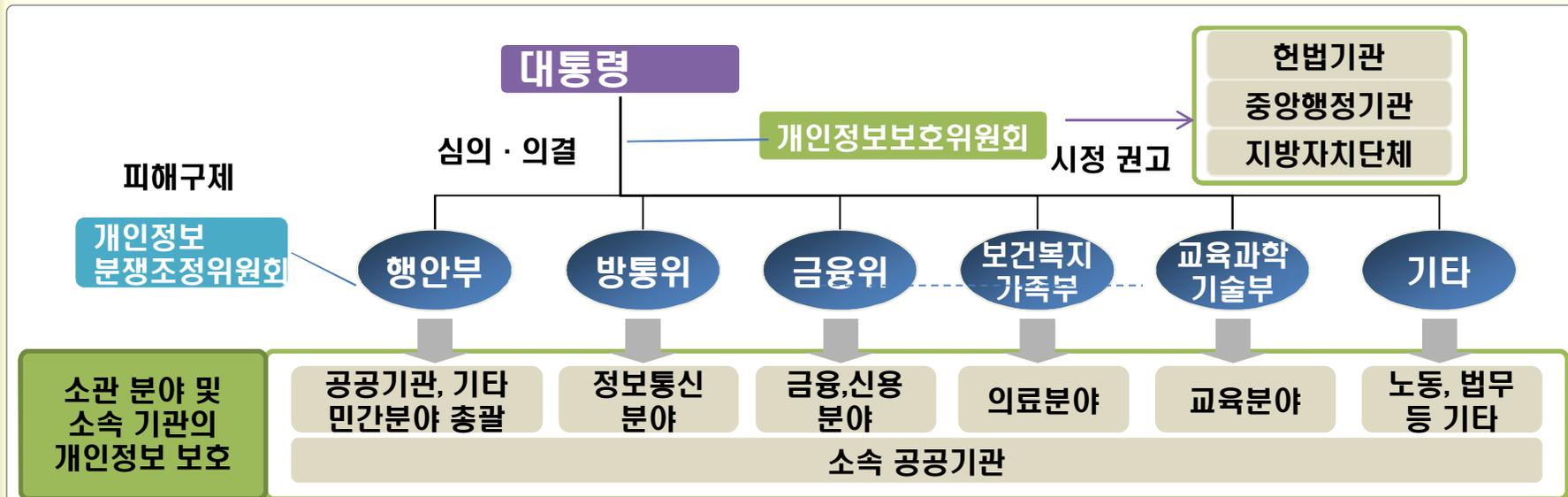
기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피해구제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도

제정 후



3.2 법 제정 추진경과

- 17대 국회에서 3개 '개인정보보호법(안)' 의원 발의
 - 노회찬 의원(민노당, 04.11), 이은영 의원(우리당, 05.7), 이해훈 의원(한나라당, 05.12)
 -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3개 발의법안 자동 폐기
- 개인정보보호법 의원안 발의
 - 이해훈 의원안(08.8.8), 변재일 의원안(08.10.27)
-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 국회 제출 ('08.11.28)
- 국회 행안위 상정('09.2.20), 공청회 개최, 법안심사소위 (총 5회)
 - 행안위 공청회(09.4), 법안심사소위 심사(09.2.23, 10.4.15, 10.4.19, 10.9.28, 10.9.29)
- 본회의 의결(' 11.3.11)
- 국무회의 의결 (' 11.3.22), 공포 (' 11.3.29), 시행 (' 11.9.30)

3.3 개인정보보호법 기본원칙

OECD 가이드라인

- 1. 수집제한의 원칙
- 2. 정보정확성의 원칙
- 3. 목적명확화 원칙
- 4. 이용제한의 원칙
- 5. 안전보호의 원칙
- 6. 공개의 원칙
- 7. 개인참가의 원칙
- 8.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보호법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처리목적 범위 안에서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보장

처리목적의 명확화

필요 목적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처리, 목적 외 활용 금지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준수 · 실천, 신뢰성 확보 노력

3.4 개인정보보호법 구성 체계



개인정보보호법

본문 9 장 75 개 조문, 부칙

- 제 1 장 총칙 - 목적, 정의, 개인정보보호원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제 2 장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 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지침, 자율규제촉진 등
- 제 3 장 개인정보의 처리
-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기준,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한 등
- 제 4 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개인정보영향평가, 유출통지제도 등
- 제 5 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열람요구권, 정정·삭제요구권, 처리정지요구권, 권리행사방법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
- 제 6 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구성, 분쟁조정 신청방법·절차, 효력, 집단분쟁조정제도 등
- 제 7 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 단체소송 대상, 소송허가요건, 확정판결의 효력 등
- 제 8 장 보칙 - 적용제외, 금지행위, 침해사실신고, 시정조치 등
- 제 9 장 벌칙 - 벌칙, 과태료 및 양벌규정 등
부칙 :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등

4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현재와 달라지는 점

4.1 개인정보보호 의무 적용대상 확대



현재

▪ 분야별 개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 보호의무 적용

- 공공기관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정보통신망법」
-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 「신용정보법」
- 준용사업자 : 「정보통신망법」

시행후

▪ 적용대상의 확대 : 공공·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포함
- 오프라인 사업자, 협회·동창회 등 비영리단체 포함

▪ 보호범위의 확대 :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외 수기문서 포함

- 동사무소 민원신청 서류 등 공공기관의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포함

2. 적용대상의 확대

개인정보보호 의무적용 대상의 변화

현재



시행후



4.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정책 심의·의결

- 개인정보보호 기본 및 시행계획 심의·의결
- 정책,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
- 법령의 해석·운용
- 공공기관의 목적외 이용·제공·심의·의결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에 대한 시정권고
- 국회에 대한 연차보고서 제출
- 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등 심의·의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총괄·조정

- 기본계획 수립·시행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정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제정·권고
- 개인정보 유출통지 운영
- 법 위반행위 조사, 시정권고·명령, 과태료 부과
- 개인정보파일 등록접수 및 현황 공개
-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 시책
-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리 운영

중앙행정기관

소관법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수행

- 소관분야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및 지침 마련

4.3 개인정보 처리 동의방법 엄격화

현재

→ 공공부문

- 동의받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없음

→ 민간부문

- 동의내용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시행후

→ 동의 획득 방법을 엄격히 규정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선택적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그 사실을 인지하고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분**
- 재화·서비스의 홍보·판매권유를 위해 동의받을 때, 정보주체가 사실을 알 수 있게 명확히 구분
-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 필요**

4.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강화

→ 주민등록번호 등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

주요내용

→ 법령에서 규정하거나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처리 가능 (제24조 제3항)

●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를 위한 관행적 수집은 불가능 (ex. 병역법 등 법령 개정 필요)

→ 인터넷 본인확인을 위한 대체수단 강구 의무화 (제24조제2항)

●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제공
(전자서명, I-PIN, 휴대전화인증 등)

→ 분실·도난·유출 등 방지를 위해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화 (제24조 제3항)

● 암호화,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제한, 잠금 장치 등

4.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강화

현재

→ 주민등록번호 유출, 도용, 불법수집, 유통, 판매 등 사회 문제화

- 현행 법제는 사후처벌 중심

→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 의무화

- 포털 (일일 평균 이용자 5만명 이상)
- 게임, 전자상거래, 기타 정보통신서비스 (일일 평균 이용자 1만명 이상)

※ 고유식별정보

-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4.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강화

시행후

→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 처리 금지, 사전 규제제도 신설

<예외적 허용>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주민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화

- 공공기관
-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PIN 등 대체수단) 제공 의무화

→ 고유식별정보 처리 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화

4.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제한 근거 마련 개인정보보호 LOK&樂

➔ 공개된 장소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

설치·운영 근거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제24조 제3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허용 기준>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목욕탕·화장실·탈의실 등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저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금지 (제25조 제2항)

<예외적 허용>

- 교도소, 정신보건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6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

➔ 개인정보파일 구축·확대 등 개인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향평가 수행

주요내용

➔ 대규모 개인정보파일 운영시 사전평가 의무화 (공공기관)

< 영향평가 실시대상 개인정보 파일 (시행령) >

1. 5만명 이상 개인정보파일 신규 구축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예상되는 경우
2. 50만명 이상 개인정보파일 구축·운영시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 또는 연동하려는 경우
3. 개인정보파일에 연평균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 영향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
- 개인정보파일 등록시 평가결과 첨부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란 ? >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이 수반되는 신규사업 또는 변경사업 추진시, 개인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여부를 조사·예측·검토하여 개선하는 제도

4.7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 · 신고제도 개인정보취급요령

→ 개인정보 유출 사실 인지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 통지 및 전문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주요내용

→ 개인정보유출시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고지 (제34조제1항)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사항>

- 유출 개인정보 항목, 시점 및 경위
- 유출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피해발생의 경우, 신고접수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

→ 대규모 유출시에는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 (제34조제3항)

● 행안부 또는 전문기관은 피해확산방지 및 피해 복구를 위한 기술 지원

4.8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정정·삭제 청구권, 처리정지 요구권 등을 부여하고, 권리행사 방법 등을 규정

주요내용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열람 요구권 (제35조)

- 정보주체는 해당 공공기관 또는 행안부 장관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열람·정정·삭제 요구 가능
- 해당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 제한·거절 가능(ex 조세의 부과징수, 각급 학교에서의 성적 평가 등)

→ 정보주체는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제37조)

- 정보주체는 공공기관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가능
-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거절 가능

4.9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주요내용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제40조)

- 공공분야까지 개인정보 분쟁 조정 확대
- 정보주체의 피해, 권리침해가 다수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가능
- 조정결과 효력이 민사상 화해에서 재판상 화해로 강화

[집단소송 사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다수 발생”



유출 피해자	1,800만 명	2,000만 명	1,125만 명	600백만 명
배상금액	1차 판결 항소 추가 소송 예정	소송 준비중	소송 진행중	소송 진행중

4.10 단체소송제도의 도입

→ 다수의 정보주체가 피해를 입거나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일정자격을 갖춘 단체가 정보주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처하도록 함

주요내용

→ 개인정보 침해행위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 제기 가능 (제51조)

● 일정요건을 갖춘 소비자 단체와 비영리단체가 다수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해 단체소송 제기 가능

▪ 소송제기 대상

- 「소비자기본법」 상의 소비자 단체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상의 비영리 민간단체

▪ 소송제기 요건

-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요구

4.11 근로자(직원)의 개인정보 처리

→ 근로자의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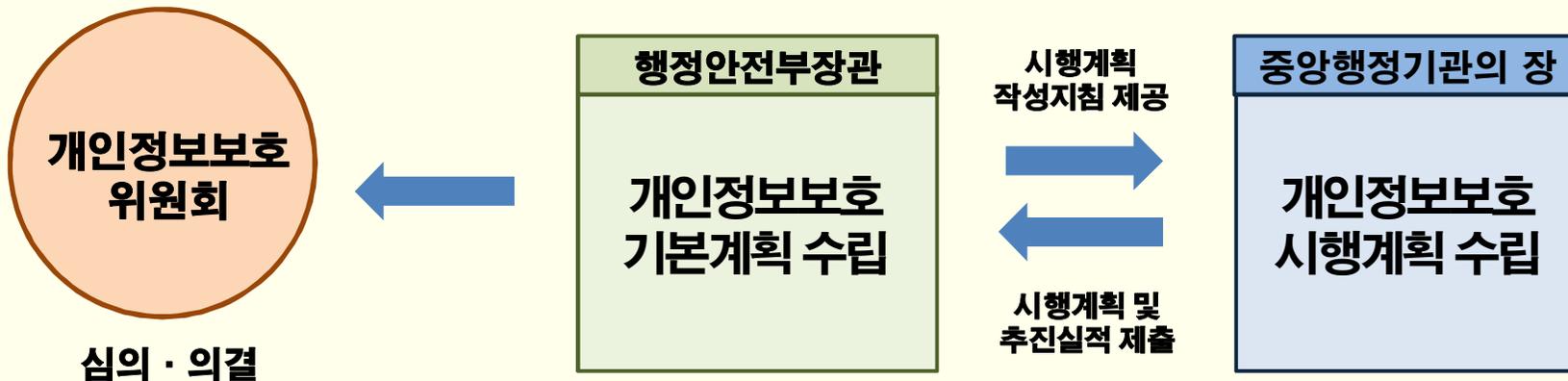
- 직원 채용시 이력서·자기소개서 등 개인정보는 근로계약의 체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 목적 달성시 개인정보 파기
 - 근로자 관리·감독을 위한 직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추적·모니터링 등)은 근로자의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사
- ※ 근무평가 기록 등도 열람권자 제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강구 필요

5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주요점검 사항

5.1 개인정보보호 계획수립 및 지침 제정 개인정보보호 Lok&樂

→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정 및 권고

-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인정보보호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침해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

5.2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기준 및 절차 개인정보보호 LOK&樂

→ 법령 등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소관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가능

●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
수집 시
고려사항

최소한의 정보수집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원칙적 수집 금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이용 · 제공, 목적 외 이용 · 제공,
마케팅 등 각각 구분 동의 필요

5.2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기준 및 절차 개인정보보호 LOK&樂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 획득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 본인 확인, 물품배송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예)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예) 회원 탈퇴시까지, 제품 A/S 기간 종료시까지 등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2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기준 및 절차

참고사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당사가 여행서비스 제공을 **수집·이용 목적** 포함 **수집 항목** 개인정보 항목과 수집 · 이용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행상품 구매 시 여행자 보험 가입 목적**: **성명, 주민번호, 주소**
2. 예약 내역 확인 및 상담 :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
3. 항공권 · 호텔 예약 등 여행 계약의 이행 목적 : 여권 번호, 여권만료일, 영문 성명

○ 고객님(동반자 포함)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1.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2.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3. 소비자 불만 및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동의 동의하지 않음

5.3 개인정보의 제공 · 공유 기준 및 절차 개인정보보호 LOK&樂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목적에 고지하고 동의 획득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고지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예) 이벤트 제휴관계의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의 명칭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예) 보험영업 TM, 마일리지(포인트) 결제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예)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등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예) 제휴계약 종결시까지 등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3 개인정보의 제공 · 공유 기준 및 절차 개인정보보호 **LOK&樂**

참고사례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및 국내외 제휴항공사, 국내외 호텔 및 숙박업체, 철도, 크루즈 및 운송업체, 해외 랜드사		영문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만료일, 성명, 주민번호, 마일리지정보, 회원등급		항공권 및 기타운송업체 예약, 숙박예약, 출국가능판 파악, 현지 행사진행 및 고객리 목적 마일리지 적립, 전환, 사용, 확인, 회원할인 및 기타의 서비스 제공
LIG화재, 동부화재, 기타 제휴보험사 외 기타 보험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행자보험가입, 제휴, 마일리지 적립, 전환, 사용, 확인, 회원할인 및 기타 편의 제공
*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목적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시~ 이용목적 달성시 및 관계법령에 따른 보관기간까지 (제휴업체에는 제휴계약 종료시까지)				

➔
 동의 동의하지 않음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보유·이용기간

5.3 개인정보의 제공 · 공유 기준 및 절차 개인정보보호 LOK&樂



동의 없이 제3자 제공/목적 외 이용이 가능한 경우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 형사소송법 등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3. 정보주체 등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법령 등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의 소관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이 경우, 관보나 홈페이지에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을 게재
☞ 제공받는 자에게 안전성 확보조치 요구 해야함

5.4 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 · 이용 기록

→ 정보주체의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시, 정보주체에게 고지

● 정보주체의 요구 시 고지내용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 ? >

*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공개된 정보주체의 정보 수집

<고지의무 예외 사항>

1.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범죄수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이에 포함되어있는 경우
2. 타인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재산 등 이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5.5 개인정보 파기의 방법 · 절차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함

- 개인정보 파기 시에는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 저장 · 관리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

<다른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사례>

※ **통신비밀보호법 제 15조의 2**

- 검사 · 사법경찰관 · 수사기관 장의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 의무

5.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기준 개인정보보호 LOK&樂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반드시 문서에 의해야 함

< 위탁 시 문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등

- **[공개 및 고지 의무]** 정보주체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및 수탁자를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 등으로 공개하고 마케팅 목적으로 위탁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고지
 - **[관리감독 의무]**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교육·처리현황 점검 등 관리 감독 책임을 가짐
 - **[재제공 금지의무]** 수탁자는 위탁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불가
- ※ 이 법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직원으로 본다

5.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강구

관리적 조치의 예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기록물의 관리 및 보호조치
- 정기적인 자체 감사의 실시
- 보호(보안)구역 지정

물리적 조치의 예

- 출입통제 장치 설치
- 물리적 잠금장치 설치
- 감시장치 설치 등

기술적 조치의 예

-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접근권한 확인 (식별, 인증 등)
- 침입차단, 방지시스템 설치
-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 주기적인 S/W 업데이트 및 점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조치 강화

5.8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 보유·운영 시 처리의 투명성 및 관리의 적정성을 위하여 개인정보파일 등록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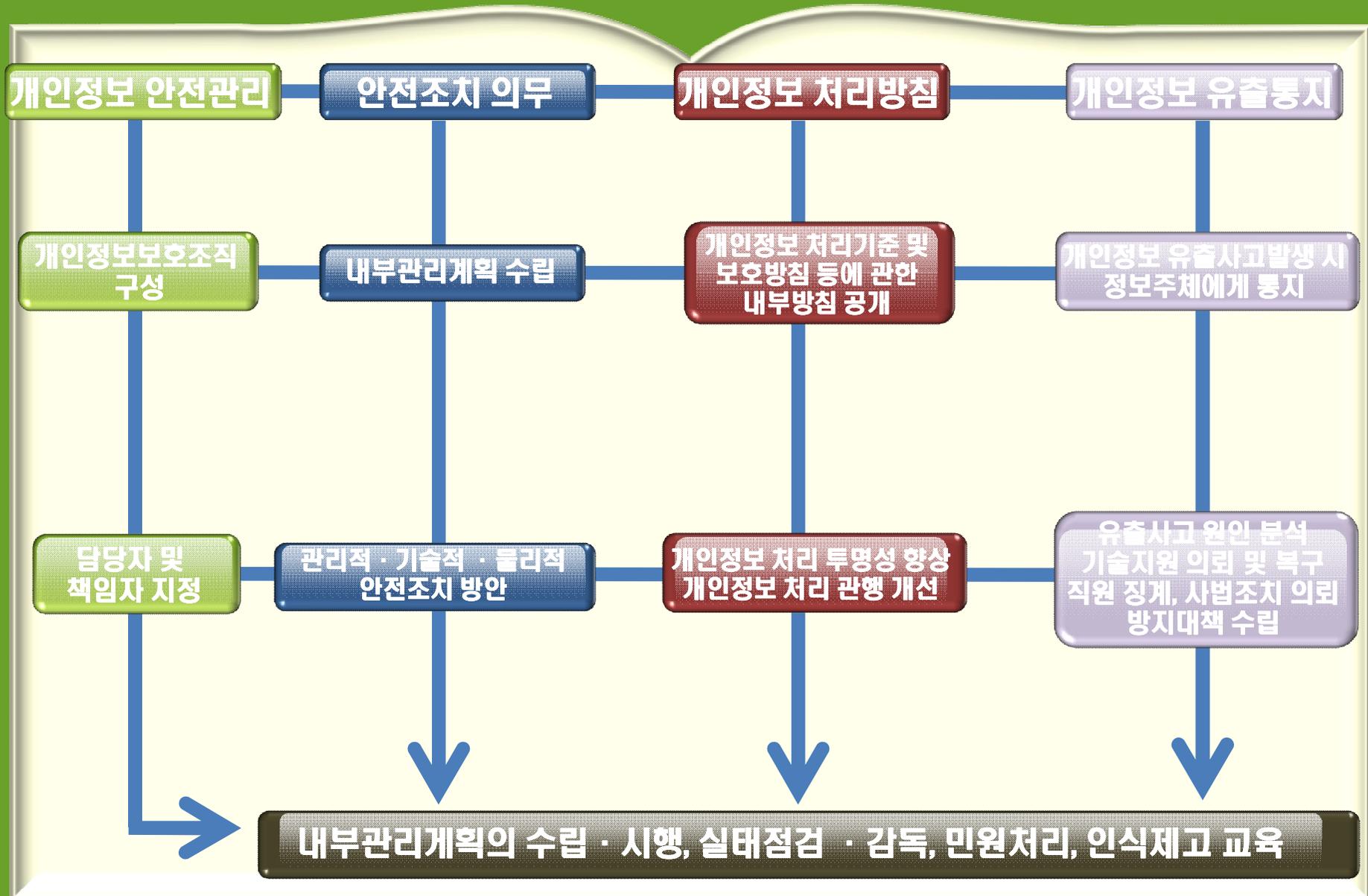
●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 운영시 명칭·운영근거·처리방법·보유기간 등을 등록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 근거 및 목적
2.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유기간
4.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 행안부 장관은 개인정보파일 등록시스템 구축·운영, 파일 등록현황 공개, 등록사항과 내용에 대한 개선권고 등을 시행

5.9 개인정보 보호 프로세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